

『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5월 7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5월 15일

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수 복

나. 제안이유

-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체육시설 사용시 대관 및 운영체제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제명을 띄워쓰기 적용 「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로 변경
- 용어 정비(안 제3조)
 - 보조경기장을 체육시설에 포함
 - 단체입장의 구성원을 30인 이상으로 구체적 명시
 - 의무경찰을 군인의 범위에 포함

- 체육시설 사용제한(안 제8조)
 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 특별한 행사시 사용제한 규정 추가
- 사용료 납부방법 현실화(안 제10조)
 -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시설사용 종료와 동시 납부에서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변경
- 사용료의 감면(안 제13조)
 - 사용료 감면대상을 구미시 주최·주관행사에서 시에서 예산 지원하여 주최·주관하는 행사로 변경

라. 참고사항

- 구미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체육시설 대관 및 운영체제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용어의 정의중 「보조경기장, 구성원 30인 이상, 의무경찰」 등 일부를 삽입 또는 자구를 수정하였으며
- 시설사용 제한규정에 「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」를 신설하였음
- 시설사용료의 정산시기를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「종료와 동시」에서「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」정산으로 사용료납부 방법을 현실화 하였으며

- 사용료의 전액 감면 대상을 구미시가 「주최·주관하는」 각종 행사에서 구미시가 「예산을 지원하여 주최·주관하는」 각종 행사로 변경하여 사용료 전액 감면대상 범위를 규제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용어정비, 사용료 납부방법 현실화 등 운영체제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체육시설은 시민들에게 널리 개방하여 활용토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
- 사용료 전액 감면대상을 「구미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」를 「구미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주최·주관하는 행사」로 감면대상 범위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